

#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56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서울시는 저임금, 고용불안 및 열악한 근무조건 등의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취약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노동권익센터」를 '14.12.8. 개소하였으며, 그간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 네트워크 구축 등에 기여하였음

- 현 수탁기관 : (사)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14.12.~현재까지)
- 주요 실적
  - 노동권익 사각지대 해소 기여 : 권리구제312건, 노동상담 7,322건, 노동교육 755회/약 40,948명
  - 노동네트워크 구축 :유관기관 업무협약 10건, 전국지자체지원노동센터협의회, 자치구노동복지센터 등 협의체 구성 운영, 법률/교육/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서울시,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등

나. '14.4.24.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 이후 6년이 경과되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 위탁기간 : 1차 '14.12.8~'17.12.7.(3년간) / 2차 '17.12.8~'20.12.7(3년간)

## 2. 주요내용

가. 운영개요

- 시설명 : 서울노동권익센터
- 위치 : 종로구 청계천로 105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 규모 : 220㎡(5층)
- 조직 : 2국 6팀(※ 休서울노동자쉼터 5개소 별도 운영)
  - ※ 休서울노동자쉼터 : 서초쉼터(강남), 북창쉼터(중구), 합정쉼터(강북), 미디어쉼터(상암), 서틀쉼터(녹번)
- 운영인력 : 총37명(센터 23명 / 쉼터 14명)

##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0.12.8.~2023.12.7.(3년)
- 대 상 : 최근 3년간 노동복지업무 관련 분야에서 사업수행 실적이 있으며, 노동 분야 사업의 이행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 위탁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소요예산(안) : 3,009,958천원('21년 예산)
- 위탁업무
  - 취약노동자 권익보호와 법률지원을 위한 상담체계 구축
  - 취약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 교육훈련과 시민홍보를 통한 노동인식 개선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노동관련 전문기관 민간위탁을 통한 취약계층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모델 확산
  - 노동복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운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의 위탁을 통한 노동관련 단체들과의 네트워크 협력체계 강화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0.1월)
  -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조례 2조4)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 편성(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노동정책담당관 권익개선팀 최은정(☎ 2133 - 5421)

## ※ 관계법령

###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공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시립병원,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영어마을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1조(협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에 대해서만 효력이 유지되며, 위탁사무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새로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